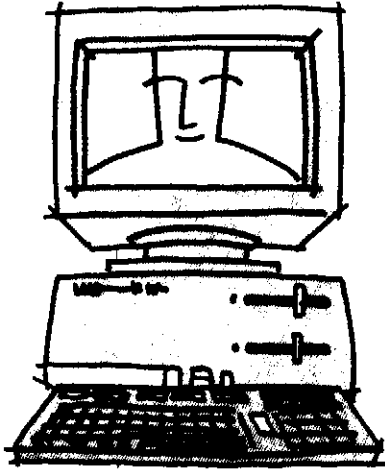


#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제코너



법제처 신각철 법제연구관

## ○ DB와 사생활비밀보호 문제

**정** 보화사회에서 개인에 관한 각종의 정보가 컴퓨터처리되거나 데이터베이스체제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비밀 침해문제라고 볼 수 있다.

DB구축과정에서 「취업자 DB」와 같이 직접 개인정보DB가 아니라 하여도 대부분의 DB가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등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DB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관례정보DB」의 경우 원고·피고를 비롯한 참고인 및 증인등의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이 수록되어야 하고, 「소비자 구매정보DB」의 경우도 특정 구매자·판매자 및 제품의 생산자·공급자 등의 인적사항이, 「무역정보 DB」의 경우도 무역거래와 관련된 업체대표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산업·문화 등 사회활동 전반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

에 DB역시 인간 즉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행정업 무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축적·배열·이용 등 개인정보의 DB화가 요구된다. 주민등록DB, 지적정보DB, 건축물정보DB, 부동산DB, 의료정보DB, 취업정보DB, 공무원인사기록DB, 공무원 보수DB, 연금DB 등등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DB화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업무 등 공적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 문에서도 개인정보의 컴퓨터처리 즉 DB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거나 부당사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93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성립되었다. (1994. 1. 7공포, 법률 제 4,734호).

##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이번에 제정·공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약칭함)은 법률의 제복과 같이 공공기관등에서 컴퓨터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공기관등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총무처 장관은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이상 관보에 공고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④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장은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 다른 기관에의 제공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계작성·학술연구등의 경우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다.

⑤ 정보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청구도 가능하다.

⑥ 민간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예에 글하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소, 변경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DB구축·운동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헌법 제17조)는 헌법상의 기본적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국민의 인

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겠지만, 민간부문까지 컴퓨터 처리되는 개인정보 모두를 규제할 경우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법이론상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정보화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우선 공공부문을 직접적대상으로 하고 민간부문을 권장적용대상(법 제22조)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의 정신과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앞으로 개인·법인·단체등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DB를 구축·운동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DB를 구축·운동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구한 등 「개인참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개인참가의 원칙은 개인에 관하여 자기정보의 통제권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때에는 「본인동의 원칙」, 「본인통지 원칙」, 「열람 및 정정청구권」의 인정등이 포함된다. 이 법률 제4조에 수집방법, 제7조에 공고, 제8조에 열람정정청구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개인에 대하여 수집목적은 분명하게 밝히고 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용할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수집해야 하고 이를 무제한 수집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목적명확화의 원칙에는 「수집제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타인에게 「제공제한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 법률 제4조에 사상·신조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수집제한, 제10조에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적정관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인 정보를 수집·축적된 개인에 관련된 각종의 정보

는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하든가 아니면 암호장치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정보는 항상 최신정보로서 정확성을 지녀야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정보보호관리 책임자 지정, ②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폐기, ③ 전산정보처리 장치의 보안대책 확립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규정에서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및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넷째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DB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이 법률에서 직접적용되지 아니하고 훈시적·추상적으로 권장 및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여도(법 제22조), 사업자는 법적의무 내지는 법적강제를 떠나서 정보윤리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일본·독일·영국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보공개조례제정이후로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까지 개인정보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지나치게 사업자를 규제하여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

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① 성명·생년월일·주소·본적·친족관계등 호적상 기재사항, ② 학력·직업·지위·상벌 등 ③ 경력과 활동사항, ④ 키·몸무게·질병·장해등 심신에 관한 사항, ⑤ 개인소득, 재산상태, 세금 납부액등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 ⑥ 학업성적·각종 시험성적·사상·종교등 능력 및 신조에 관한 사항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정보를 모두 비공개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오히려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① 공표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정보작성 당시에 정보주체에게 공표할 정보임을 밝힌 정보
- ② 전화번호부와 같이 개인이 자주적(自主的)으로 공표한 자료로서 누구든지 알수 있는 정보
- ③ 종래까지 관행상으로 계속 공표되었던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정보
- ④ 그 밖에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의 4가지 원칙에 따라서 DB구축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